

-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2. 9. 4. -----최광렬의원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02. 9. 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05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02.9.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재근 의원)

가. 제안이유

사하구 직제신설에 따른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에 포함하여 의정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업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포함
(안 제5조제1항 "3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번 조례 개정안은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에 의거 직제 신설된 을숙도문화회관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본 조례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추가하므로써 효과적이고 내실있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결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